

인천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648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피고 1. A 주식회사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오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예나

변론 종결 2022. 11. 11.

판결 선고 2022. 12. 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806,149원 및 그 중 721,981,313원에 대하여는 2021. 9. 23.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9. 9.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예정인 채무액 800,000,000원 중 720,000,000원의 채무를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9. 9. 23.부터 2020. 9.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C)를 기업은행 부천내동지점장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제10조 제1, 2항).

'원고가 정하는 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율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제10조 제3항), 2019. 4. 1.부터 원고가 정하는 율은 8%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율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재임하고 있던 피고 B은 2019. 9.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

약정인(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이하 "보증기업"이라 한다.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제2조 표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약정인 및 보증기업은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어 부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정인이 제2조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증기업 : 피고 회사
2. 신용보증약정 : 2019년 9월 23.일 자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3. 보증원금(한도금액) : 금 720,000,000원
4. 보증(한도거래)기간 : 2019년 9월 23.일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제2조(책임경영의무) ①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기업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신의성실의무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회생·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명의대여, 사해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6. 제6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7.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신보의 사전동의

8.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② 약정인과 보증기업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신보와 보증거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제1조 표시 신용보증 보증기간에 보증 전액 해지. 다만, 신보가 조건변경 및 갱신보증을 통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신규보증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보증 분할해지를 원칙으로 운용

2. 약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즉시 해지하거나 보증기간 연장을 제한

가. 대표자 사임

나. 경영탈퇴

다.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라.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의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 상실

제3조(책임경영의무 준수기간) ① 약정인과 보증기업의 책임경영의무 준수 기간은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기간으로 합니다.

② 약정인과 보증기업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채무가 상환되지 않거나 보증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보증기한 또는 주채무 상환 시 때까지 책임경영의무를 준수하기로 합니다.

제4조(책임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 및 보증기업에 대하여 신보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2. 손해배상 청구

3. 사전구상권 행사

4. 신용보증 기한이익상실(주채권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통지 포함)

5. 신용보증 해지 및 회수

6. 신규보증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신보가 중대성을 판단하여 제1항의 조치를 유보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3년 이내 신보가 정한 기간에 보증 분할해지. 단, 제2조 제2항 제1호의 기간 이내 운용
2. 보증료율 최대 1%p 가산
3. 신규보증 금지

③ 제2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는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자금용도준수의무) ① 약정인은 별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조의 보증서 담보대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용도에 맞게 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제1조의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한 보증서 담보대출은 지정한 전용계좌만을 활용하여 직접 사용처로 출금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출금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금내역서를 신보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제1조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 경우 신보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1. 부동산 투자, 주식 매입 등 자금사용계획과 달리 사용
2.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거래대금으로 지급
3.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으로 등록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 지급
4. 임직원 및 관계회사 등에 대여
5. 현금으로 출금 등

4)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2,000주 중 400,000주는 D이, 2,000주는 피고 B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보증채무이행 등

피고 회사는 2019. 10. 1.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8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2021. 8. 31.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원고는 2021. 9.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721,981,313원(= 원금 720,000,000원 + 이자 1,981,313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등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2,731,674원을 지출하였다가, 송달료 환급금 등으로 25,188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 B의 주식 처분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 변경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으나, 2021. 5. 28. 사임하여 같은 날 사임 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E에게 양도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D 또한 같은 시기에 E에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2,000주는 모두 E이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2,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721,981,313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위 721,981,313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1)에 따른 위약금 118,350원[= 신용보증원금 720,000,000원 × 연 이율 12% × 5일(보증금납입일 다음 날인 2021. 9. 18.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21. 9. 22.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 등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2,706,486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에 따라 경영 탈퇴 시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제2조 제1항

제7호), 자금용도 준수의무(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약정 제4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806,149원(= 대위변제금 721,981,313원 + 위약금 118,350원 + 채권보전비용 2,706,48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21,981,313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일인 2021.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신용보증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이 자금용도를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 B의 경영 탈퇴로 인하여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을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B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구상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경영약정의 각 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B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에서 사임하고,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같은 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제6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피고 B이 작성한 '자금사용계획서'에 따른 자금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출금이 피고 B이 작성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위반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1항 제7호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책임경영약정 체결 당시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를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 B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체결 당시의 보유 지분의 과소 혹은 피고 B의 책임경영약정 위반에 따른 피고 회사의 경영 공백 발생 등 책임경영의무 위반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에 따른 책임경영의무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채권보전비용을 합한 724,806,14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21,981,31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후

판사이주일

판사이인화

별지

1)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